C - 95 - 2014

- (가) 긴장 작업 전 긴장장치 후방에는 인장력의 최대반력에 견딜 수 있는 방 호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긴장 작업 전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른 띠장의 갑작스런 한쪽으로 치우침, 비틀림, 넘어짐 등에 대하여 누름 브라켓(Bracket)의 적용, 홈메우기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다) 긴장 작업 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(라) 긴장 작업 중에는 긴장장치 배면에서의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8) 띠장 긴장 공법의 흙막이 공사 시 줄파기 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다음의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, 기록, 표시하여야 하며,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, 주지시켜야 한다.
- (나) 흙막이 시공 위치에 상하수도관, 통신케이블, 가스관, 고압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의 지하매설물 현황도에서 검토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하매설물 탐사장비(GPR, 탄성파 등)를 이용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. 또한 줄파기를 통하여 매설물을 노출시켜 야하며, 필요 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9) 띠장 긴장 공법 흙막이 공사 시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현장 여건과 진행 공종별 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각종 장비의 뒤집힘, 깔림, 끼임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장비의 통로는 배수가 잘되도록 조치하고 지반의 침하나 변형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 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양질의 토사치환 및 철판 깔기나 콘크리트 등을 포설한다.
- (나) 크레인, 굴착장비 등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 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, 작업 시작